

광주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현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개별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 13개 단체만 정액기준을 운영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정액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보조금 지원대상(안 제4조)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지원범위(안 제5조)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 지원 가능
-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안 제6조)
 -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 신청 및 접수(안 제7조)
 -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
- 심의 및 결과통보(안 제8조 ~ 제9조)
 -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별도 심의기구로 회부하여 심의 후 결과 통보
- 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0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를 위한 별도 심의기구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은 광주광역시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사후 평가, 별도 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안 제16조 ~ 제18조)
 -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 보고의무화, 보조금의 별도 계정의 설정 및 관리 등
- 준용(안 제19조)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

3. 검토의견

이 제정조례안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된 이 제정조례안의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안 제4조)과 지원범위(안 제5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6조), 지원신청서 접수(안 제7조), 심의 및 결과통보 등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안 제8조 및 제9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를 위한 별도 심의기구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은 현재 공무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안 제10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제11조(회의운영)
제2조(용어의 정의)	제12조(의견청취 등)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13조(회의록)
제4조(지원대상)	제14조(실비보상)
제5조(지원범위)	제15조(운영세칙)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6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7조(신청 및 접수)	제17조(보고 등)
제8조(심의)	제18조(별도계정)
제9조(결과통보)	제19조(준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부 칙

- 제1항(시행일)
- 제2항(경과규정)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개별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해 왔으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성숙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기준폐지와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투명성과 합리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민간단체 보조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되어온 바와 같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정산과정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일방적 운영비 지

원, 일회성 행사에 대한 지원, 정산과정의 투명성 결여, 사업성과에 따른 지원미비 등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항목들이라 하겠습니다.

무조건 지원상한선으로 지원되어 온 관변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 없이 필요에 따라 선심성으로 지원되었던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자치단체의 인구, 예산규모, 면적 등의 크기와 연동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기준(ceiling)만 지침에서 제시하면서 13개 정액보조단체 기준을 폐지하고 임의 보조단체와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과 투명성, 공정성 등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입법적 조치라 판단합니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과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는 심의위원회의 투명한 구성을 통하여 더 이상 사회단체 보조사업이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의 사례로 지적되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